



사회적 법익 침해

- 제 1 장 | 보도 윤리 위반
- 제 2 장 | 차별 금지 위반
- 제 3 장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 제 4 장 | 성관련 보도
- 제 5 장 | 자살 보도
- 제 6 장 | 마약·약물관련 보도
- 제 7 장 | 폭력 묘사
- 제 8 장 | 충격·혐오감
- 제 9 장 | 여론조사 보도
- 제10장 | 기사형 광고
- 제11장 | 기사 제목

제 1 장 | 보도 윤리 위반

사례 12

의결번호	제2020-144호
매 체 명	TV조선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24일 뉴스9 프로그램
기사제목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닫고 봉쇄 도시 확대

1. 보도내용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닫고 봉쇄 도시 확대」의 제목

「'우한 폐렴'에 쓰러지는 환자들...中, 자금성 닫고 봉쇄 도시 확대」 제하의 영상



「리포트 : 마스크 차림으로 서 있던 남성.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진 사람들을 실어가려는 앰블런스가 보이고, 병원은 몰려든 환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폐렴의 발원지, 우한의 풍경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길에서 쓰러지는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면서 그가 우한 폐렴 환자라고 보도하였다. 해당 사진 및 영상 속 인물이 우한 폐렴 환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 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3

의결번호	제2020-246호
매 체 명	통일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4월 26일 북한소식면
기사제목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

1. 보도내용

「김정은 위원장, 25일 서거...김여정 계승」의 제목

「-“현지지도 길에서 급변으로 서거” <중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0시 30분에 현지지도 길에서 급변으로 서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오전 보도했다.

이어 “김여정 동지께서 계승하신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완수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라고 발표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5일 서거했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5월 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

비록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망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2 장 | 차별 금지 위반

사례 14

의결번호	제2020-145호
매 체 명	헤럴드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29일 5면
기사제목	상인들 “손님들 불안할까 마스크 안써요...복불복이죠 뭐”

1. 보도내용

「마스크 대란에도 한국 체류 중국인들이 위생에 둔감한 현실을 반영하듯, 역 주변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자 우한 폐렴을 무색하게 하는 비위생적인 행태가 준비했다. (중략)

일부 행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중국인 또는 화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비율이 극히 낮았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스케치하는 보도를 하면서 중국인들의 비위생적인 행태가 준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는 특정 국적과 지역이 특별히 비위생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여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5

의결번호	제2020-146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대놓고 기침하는 노인들

1. 보도내용

「‘우한 폐렴’ 유행인데 무상 보급한 마스크 안 쓰고 지하철서 대놓고 기침하는 노인들」의 제목 「이런 가운데 일부 노인들은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하철 및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노인들이 보이곤 하는데 기침을 할 때면 입을 가리지 않고 하는 광경도 종종 목격된다. (중략)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숨쉬기도 답답한데 마스크를 어떻게 끼고 다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중략) 그러나 노인들은 우한 폐렴 및 미세먼지 등 현 상황에 대한 인지와 경각심이 부족해 이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러한 상황에 노인들의 안일한 경각심은 전염성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2차 전염으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시키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기침을 하여 2차 전염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자가 노인층에만 있는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편향된 표현으로서 특정 연령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6

의결번호	제2020-247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7일 시사면
기사제목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1. 보도내용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의 제목
 「이태원 게이클럽에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이태원 게이클럽 ○은 이날 SNS에 “지역사회 확진자가 2일 00:20~03:00 ○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후략)」

2. 권고사항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클럽이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동선 공개 등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클럽을 게이클럽이라고 공개한 것은 방역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3 장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사례 17

의결번호	제2020-497호
매 체 명	일요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3일 월드컵
기사제목	동성 성폭행 피해 미군들 “우린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1. 보도내용

「최근 독일 시사주간 ‘슈테른’은 미군부대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군인들이 속속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도했다. 실제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긴 채 고통 속에 살던 많은 퇴역 군인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중략)

“그들은 다음번에는 변기청소 솔을 항문에 삽입하는 식으로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면서 “나는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 항문에서 피를 흘리면서 대령에게 달려갔다”라고 회상했다. (중략)
한번은 삼푸 병을 항문에 억지로 쑤셔넣는 식의 성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미국의 부대 내 동성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4 장 | 성관련 보도

사례 18

의결번호	제2020-38호
매 체 명	부산닷컴
보도일 및 위치	2019년 11월 25일 사회면
기사제목	○○○학교 男생도 단독방, 성희롱 발언에도 솜방망이

1. 보도내용

「○○○학교 男생도 단독방, 성희롱 발언에도 솜방망이」 제하의 사진



「이들은 단독방에서 선배 기수 여성도들을 향해 “59(기수) XXX들은...” “XX년들이 지들 땀에는 배려라고 좋다고 하겠지” “X발 지렸다”고 했다. 상관인 훈육 장교들에게까지 “훈육관 이년들은 저질러놓고 뒤편치는 우리가 다 한다” “훈육관님 ‘X리동절(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와



어리둥절을 합친 말) 개꿀잼” “XX이는 허수아비 소령, 세워만 놓은 듯 꼬추도 아니고” 같은 발언도 했다.

여생도들의 간호실습을 빗대 “회음부 간호를 X되게 하겠다” “(실습 나가서) 고추 빠는 거 아니냐”고 했다. 동기 여생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클럽에서 엉덩이를 비비는 게 백배 낫겠다. XX 어째 화장으로 여드름 자국이 안 지워지냐”라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도 했다. 일부 여생도들의 페미니즘 관련 발언을 캡처해 “페미에 취한다” “보이루”라며 여성혐오 발언을 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학교 일부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자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을 고발한 게시물의 상당 부분을 게재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을 독자들에게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9

의결번호	제2020-500호
매 체 명	오편 디스커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8일 월드뉴스면
기사제목	백화점 화장실에서 대낮에 XX하다 ‘망신’ 당한 커플 (사진)

1. 보도내용

「백화점 화장실에서 대낮에 XX하다 ‘망신’ 당한 커플 (사진)」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기사는 베트남의 백화점 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 화제라고 전하면서 해당 성관계 모습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장 | 자살 보도

사례 20

의결번호	제2020-350호
매 체 명	경기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28일 19면
기사제목	20대 소방관, “힘들다” 극단적 선택

1. 보도내용

「20대 소방관이 일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소방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작은 방에서 해당 기관 소속 A(○○)소방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A소방사는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소방학교에서 ○○ 업무를 담당해왔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소방관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속, 직급, 직무, 나이, 인사발령 시기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20-447호
매 체 명	뉴스워치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28일 사회면
기사제목	['○○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

1. 보도내용

「['○○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의 제목 「앞서 지난 27일 ○○전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전자 내 한 ○○본부 ○○○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위 '엘리트 사원'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도 별다른 이상 조짐은 없었으며 이날 오전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를 하다가 오후 12시34분께 17층 사무실로 활용되지 않은 빈 공간에서 신발을 벗어 놓은 채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사고현장을 둘러본 결과, 사고가 일어났다고는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됐다. A씨가 투신했다는 장소도 직접 살펴본 결과 물청소로 깨끗하게 원래대로 복원됐다. (중략)

본지가 접촉한 관계자는 “(당시 사고현장 상태는) 회사 측 지시로 사고현장에 가보니 시신이 크게 손상돼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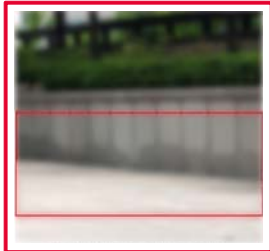
그러면서 “(A씨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일부 구역은 빌딩을 관리업체 직원을 총 동원해 대대적으로 물청소하는 데만 3~4시간이 걸렸다”면서 “일부 구간은 복구가 너무 어려워 타일을 새로 갈아야 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후략)



「[‘OO전자’ 女직원 사망 미스터리 ‘추적’] ‘엘리트’ 직원 왜 스스로 목숨 끊었나」 제하의 사진



지난 27일 ■ 전자 직원 A씨가 이날 오후 ■ 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중구 ■ 일대 ■ 빌딩 외관 전경. 사진=■



28일 ■ 빌딩을 방문했을 당시 시멘트 벽면에는 ■ 물청소 흔적이 고스란히 보인다. 사진=■



■ 전자 ■ 본부에서 근무한 A씨가 ■ 뛰어내린 지점. 사진=■



시멘트 바닥은 물청소로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 빨간색 부분이 A씨가 ■ 빌딩 본사사옥(정문 기준) 서쪽 인근에 떨어져 쓰러진 지점.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자살 장소를 묘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 성별 및 근무했던 회사명, 위치, 부서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그가 건물에서 뛰어내린 지점 및 떨어져 쓰러진 지점 등의 현장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여 자살 장소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2

의결번호	제2020-802호
매 체 명	MBN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0월 28일 MBN 프레스룸 프로그램
기사제목	[MBN프레스룸] 음독이나, 백신이나, 소년의 사망 원인 논란

1. 보도내용

「[MBN프레스룸] 음독이나, 백신이나, 소년의 사망 원인 논란」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은 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을 만들 때 고기의 선홍빛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독성이 강해 0g 넘는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자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부검결과에서 검출된 약명과 치사량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살 수단에 대한 구체적 보도로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6 장 | 마약·약물관련 보도

사례 23

의결번호	제2020-877호
매 체 명	아시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1월 12일 13면
기사제목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 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1.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를 비롯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속칭 ‘○○○’, ○○○ 종류)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략)

목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신종 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g, 시가 ○만원 상당)와 ○○○(○정, 시가 ○만원 상당) 등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중략)

해경에 따르면,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씨(20·남)는 현재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상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중간 판매책 으로부터 합성마약 등을 구매한 뒤, 이를 찾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합성대마는 1개피(○g)당 ○~○만원에, ○○○는 1정당 ○~○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투약한 신종 마약류 합성마약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흡연용 환각제로서, 담배가루나 차 가루 등에 섞어 담배 형태로 말아



흡연하는 마약류이며,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이 상세히 언급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독자에게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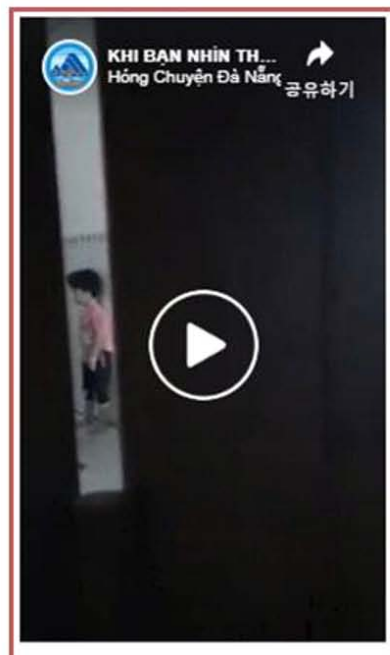
제 7 장 | 폭력 묘사

사례 24

의결번호	제2020-534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1일 A1면
기사제목	3살 의붓딸 머리 내려치고 목조른 계부...현재 베트남서 난리난 아동학대 사건

1. 보도내용

「3살 의붓딸 머리 내려치고 목조른 계부...현재 베트남서 난리난 아동학대 사건」 제하의 영상





2. 권고사항

언론은 가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베트남에서 계부가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가학적인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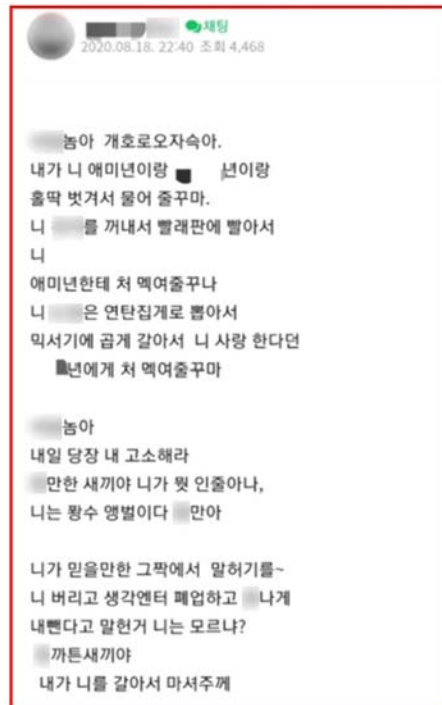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5

의결번호	제2020-721호
매 체 명	인터넷 제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8월 24일 Culture면
기사제목	권영찬, 112 신고 “김호중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잔인한 협박 때문에…

1. 보도내용

「권영찬, 112 신고 “김호중 향해 네 XX 곱게 갈아서 먹여주겠다” 잔인한 협박 때문에…」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 추가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가수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협박글 캡처사진을 상세히 게재하였다.

이는 언어폭력적 내용이 담긴 캡처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도록 한 것으로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8 장 | 충격·혐오감

사례 26

의결번호	제2020-636호
매 체 명	인사이드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3일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밟은 택배 트럭에 3살 아들 깔리자 2초 만에 엄마가 한 행동

1. 보도내용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 밟은 택배 트럭에 3살 아들 깔리자 2초 만에 엄마가 한 행동」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2. 권고사항

언론은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도하면서 택배 화물차에 3살 아이가 깔리는 사고 당시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7

의결번호	제2020-911호
매 체 명	인터넷 F.E TIMES(F.E 타임스)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1월 4일 FAM ISSUE면
기사제목	1자로 펼쳐진 고양이 창자...‘김해 나래공원 길고양이 학대 사건’ 엄중수사 촉구

1. 보도내용

「1자로 펼쳐진 고양이 창자...‘김해 나래공원 길고양이 학대 사건’ 엄중수사 촉구」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가림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 추가함



「지난달 경상남도 김해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길고양이 사체와 함께 1자로 펼쳐진 창자가 발견돼 누리꾼들의 큰 충격을 안겼다.

공원 한 가운데에 1자로 펼쳐진 창자는 바로 옆 죽은 길고양이의 창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캣맘이 그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누워있는 고양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 옆에는 창자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전시해둔 것처럼 가지런히 1자로 펼쳐져있어 학대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 게재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공원에서 고양이 사체와 함께 창자가 발견됐다고 보도하면서 사체와 창자 사진을 게재하고 발견 당시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 9 장 | 여론조사 보도

사례 28

의결번호	제2020-544호
매 체 명	아시아투데이 ASIATODAY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7월 27일 1면
기사제목	수술실 CCTV, 권리인가 감시인가

1. 보도내용

「최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수술실 내 범죄행위 방지와 신뢰도 제고 등의 이유로 찬성한다는 측과, 사생활 침해 및 의료행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등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해당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9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제 10 장 | 기사형 광고

사례 29

의결번호	제2020-394호
매 체 명	경기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5월 25일 16면
기사제목	관절·척추질환 전문 '성남 ○○○병원' 오픈

1. 보도내용

「관절·척추질환 전문 '성남 ○○○병원' 오픈」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가림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가림 처리함

「성남 ○○○병원(병원장 ○○○, ○○○)이 성남을 비롯해 용인, 광주, 여주, 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의 관절, 척추 치료 여건 개선에 나선다.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와 연결되고 탄천, 송파 IC는 직선거리로 각각 ○km씩 떨어져 있다. (중략)

척추신경팀은 전신 척추스캔과 체내조직의 특성, 성분분석이 가능한 독일 지멘스사의 최신형 MRI를 비롯한 여러 첨단영상의학 장비 도입으로 모호한 진단에 따른 수술 시행을 최소화한다. 비수술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단순한 신경차단 치료가 아니다. 실시간 영상의학 장비와 초소형 척추신경 내시경과 같은 학계 최신 지견 치료를 시행해 시술만으로도 수술에 준하는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자」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등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11 장 | 기사 제목

사례 30

의결번호	제2020-918호
매 체 명	뉴시안
보도일 및 위치	2020년 10월 19일 사회면
기사제목	외국인 건보료 안내고 '먹튀'...최근 5년간 69억원

1. 보도내용

「외국인 건보료 안내고 '먹튀'...최근 5년간 69억원」의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략)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목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국외 체류자임에도

외국인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